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30
----------	-----

제출년월일 : 2004. 11. .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5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코자 합니다.

2. 주요 골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11건(128,620㎡) 6,006,850천원이며, 처분이 1건(36,146㎡) 139,369천원입니다.

1) 봉평보건지소, 개수, 속사 보건진료소 신축(보건의료원)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동리 302-2번지 외 2필지 1,369㎡의 부지매입과 건물 3동을 신축코자 함.

2) 평창, 장평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문화관광과)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하여 종부리 498-1번지 외 1필지 3,845㎡의 부지를 매입코자 함.

3) 평창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문화관광과)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의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코자 종부리 산61-2번지 외 23필지 120,096㎡의 부지를 매입코자 함.

4) 둔전평농악놀이 야외공연장 부지매입(문화관광과)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5호로 지정되고 2002년 전국민속축제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둔전평농악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용전리 135-4번지 외 1필지 1,168㎡의 부지를 매입코자 함.

5) 달빛극장 건립(문화관광과)

현재 구 덕거초등학교를 극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연극문화를 발전시키고, 효석문화제와 피서철 및 주말을 통한 정기적인 공연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연극인촌을 조성코자 함.

6) 용평 소방출장소 신축(재무과)

화재 및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재산 및 주민보호를 위하여 용전리 416-1번지 상에 200㎡의 소방출장소를 신축코자 함.

7) 화전대토개간 및 일반 공유지 매각(재무과)

화전대토개간 공유지 하안미리 1603-9번지 외 5필지 36,146㎡를 현재 점유자 및 경작자에게 수의매각코자 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당초			변경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7	127,253	4,266,850	7	127,253	4,266,850	-	-	-
		건물	4	1,367	1,740,000	4	1,367	1,740,000	-	-	-
		기타	-	-	-	-	-	-	-	-	-
	매입	토지	7	127,253	4,266,850	7	127,253	4,266,850			
		건물	-	-	-						
		기타	-	-	-						
	교환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기타	토지	-	-	-						
		건물	4	1,367	1,740,000	4	1,367	1,740,000			
		기타	-	-	-						
처분	합계	토지	1	36,146	139,369	1	36,146	139,369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매각	토지	1	36,146	139,369	1	36,146	139,369			
		건물	-	-	-						
		기타	-	-	-						
	교환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기타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 토지매입 합계			127,253	4,266,850			
1	답	종부리498-1	849	80,000	상반기	게이트볼장	김영환
	하천	장평리676-16	2,996	50,000	상반기	게이트볼장	건교부
2	답	창동리302-3	562	112,000	상반기	보건지소	김호기
	답	창동리302-4	380	88,000	상반기		김호기
3	전	주진리53-1	185	4,000	상반기	공설묘지진입로 (기편입)	김찬준
4	전	창동리268-13	590	120,000	상반기	소방출장소 (지번변경)	오춘애
5	전	용전리135-4	451	60,000	상반기	둔전평농악놀이 조성사업	이국한
	대	용전리135-12	717	110,000	상반기		김진봉
6	대	개수리255-3	427	40,000	상반기	보건진료소	이몽하
7	임야	종부리596-14	663	19,890	상반기	스포츠타운조성	이영철외8
	임야	종부리산61-2	305	9,150			민병은
	임야	종부리산64	54,246	1,627,380			이영철외8
	임야	종부리산64-4	100	3,000			이영철외8
	답	종부리489	635	19,050			배문자
	답	종부리1131-3	1,163	34,890			김거년
	답	종부리1131-4	1,411	42,330			김진룡
	답	종부리1131-5	3,512	105,360			이갑룡
	답	종부리1131-6	1,750	52,500			김진용외1
답	종부리1131-7	3,131	93,900	박희대			

7	답	종부리1131-9	2,225	66,750	상반기	스포츠타운조성	김홍배
	답	종부리1131-10	2,222	66,660			최경숙
	답	종부리1131-11	1,650	49,500			최경숙
	답	종부리1131-12	762	22,860			김연기
	전	종부리596	872	26,160			이장현외1
	전	종부리601-1	264	7,920			적산토지
	묘	종부리601-2	2,936	88,080			종중묘
	임야	종부리산79	6,347	190,410			종중묘
	임야	종부리산80	3,514	105,420			김홍석
	임야	종부리산82	28,699	860,970			김동주
	임야	종부리산83	1,955	58,650			방건수
	임야	종부리산84-1	266	7,980			방건수
	임야	종부리산84-2	722	21,660			방건수
	○ 건축물 신·증축 합계			1,367			1,740,000
1	철.콘	창동리302-3외1	397	580,000	상반기	보건지소	
2	철.콘	황계리270-5	100	120,000	상반기	경로당 (지번변경)	
3	철.콘	용전리416-1	100	240,000	상반기	소방출장소	
4	철.콘	개수리255-3	130	110,000	상반기	보건진료소	
		속사리459-19	130	110,000	상반기	보건진료소	
5	공작물	덕거리387-3	610	700,000	상반기	연극장	

200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표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 각 사 유	매 수 희망자
	지목	소재지	지적				
○토지매각 합계			36,146	36,146	139,369		
1	전	하안미리1603-9	3,790	3,790	26,454	화전대토개간지	권오집
	전	하안미리1603-11	3,081	3,081	21,505	화전대토개간지	송춘호
	전	하안미리1603-12	3,093	3,093	21,589	화전대토개간지	송춘호
	전	하안미리1603-14	6,091	6,091	42,515	화전대토개간지	송춘호
	전	하안미리637-2	7,215	7,215	14,430	화전대토개간지	송명옥
	전	하안미리639-5	12,876	12,876	12,876	화전대토개간지	김석호
○건축물처분 합계							
	소계		-	-			
		이	하	빈	칸		

관 계 법 령

지 방 재 정 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5. 삭제 <2002.11.29>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고자료(지적도)

평 창 군

1313천

개수보전진포소부지

1917천

792

0

8

7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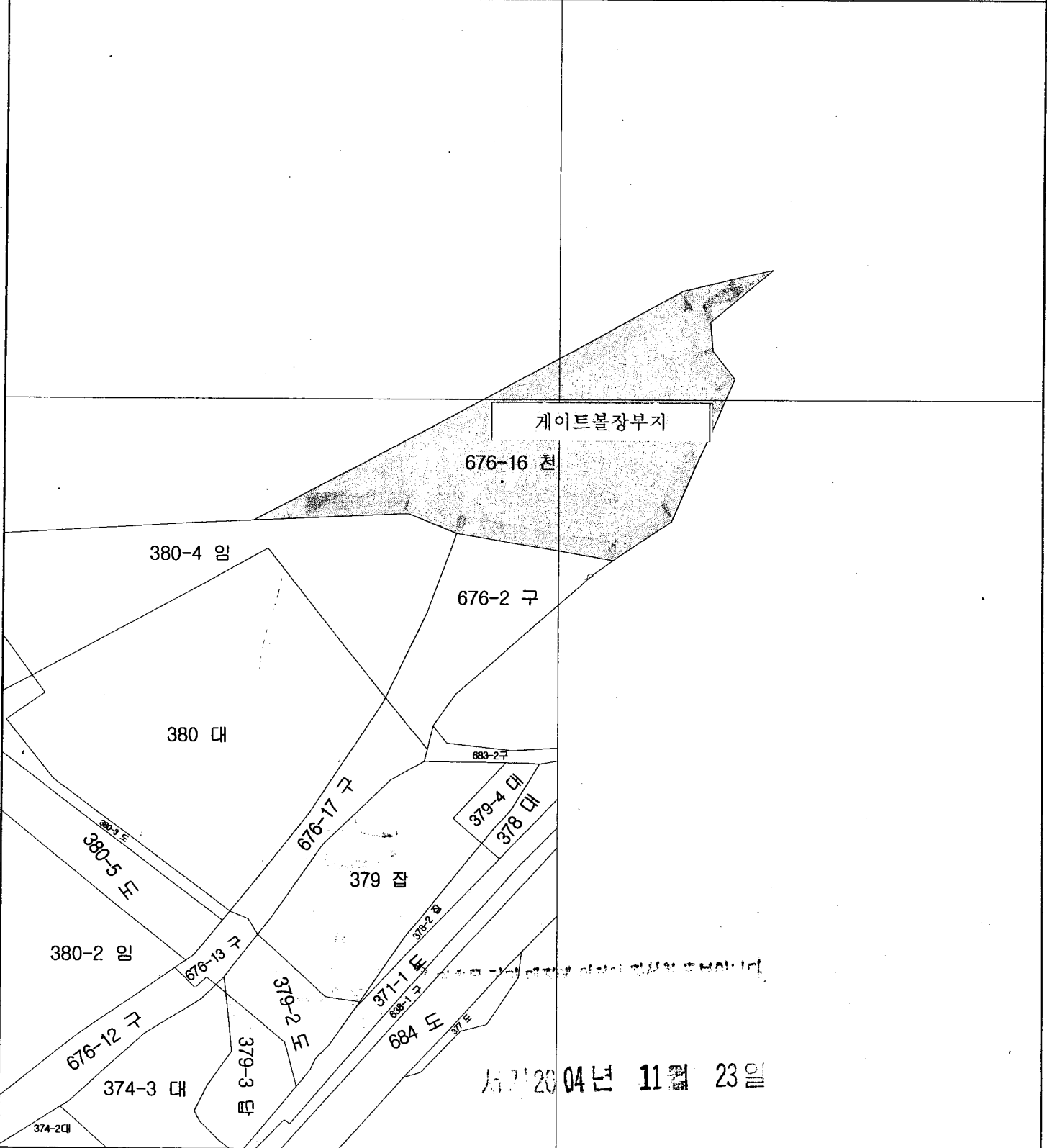
0

1

2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04-1123-0079-03	처리시간	10시 25분 39초	작성자	김태한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자번	676-16	축척	1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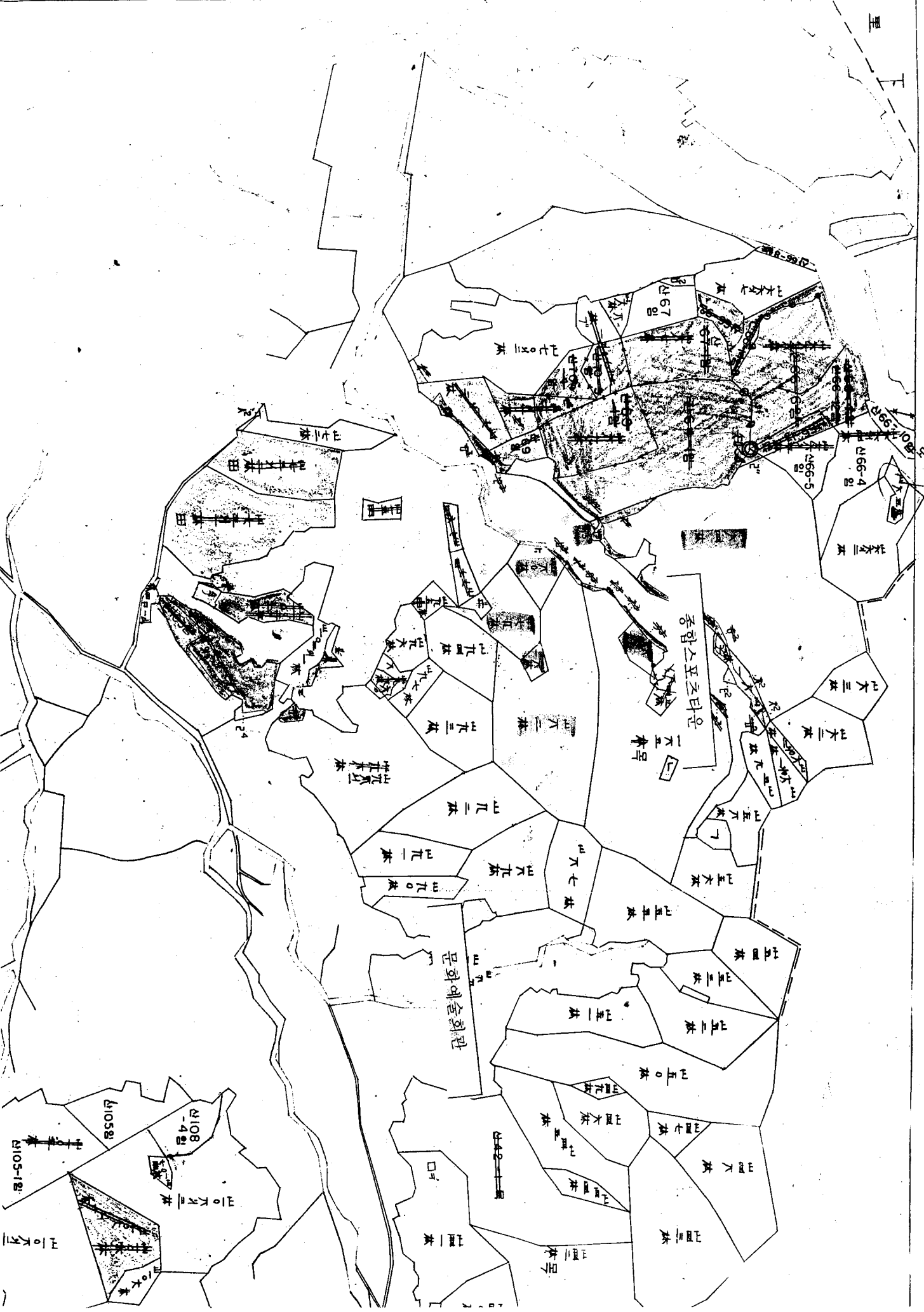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4년 11월 23일

강원도 평창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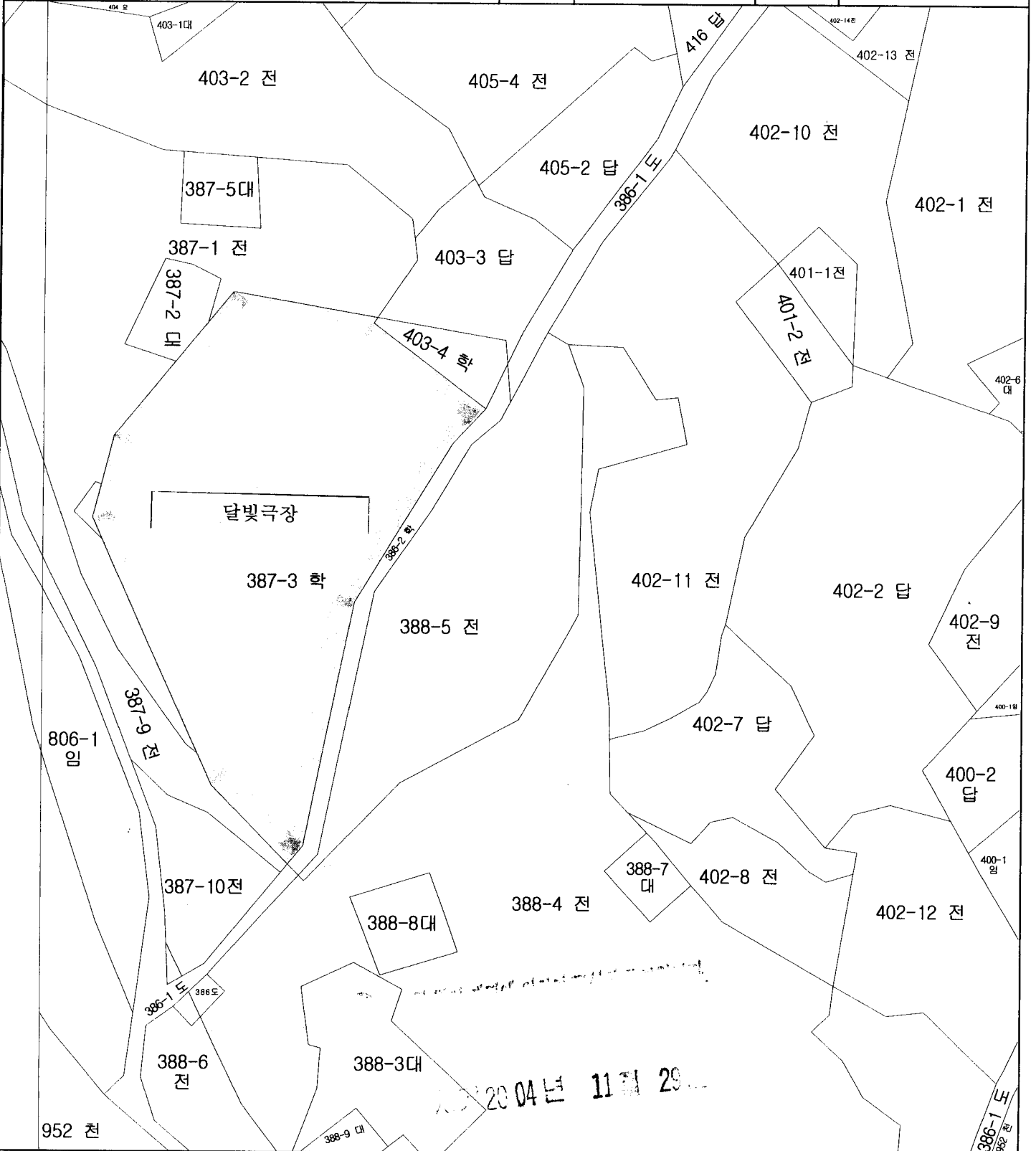




200.514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04-1129-0544-03	처리시각	16시 43분 15초	작성자	김태한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지번	387-3	축척	1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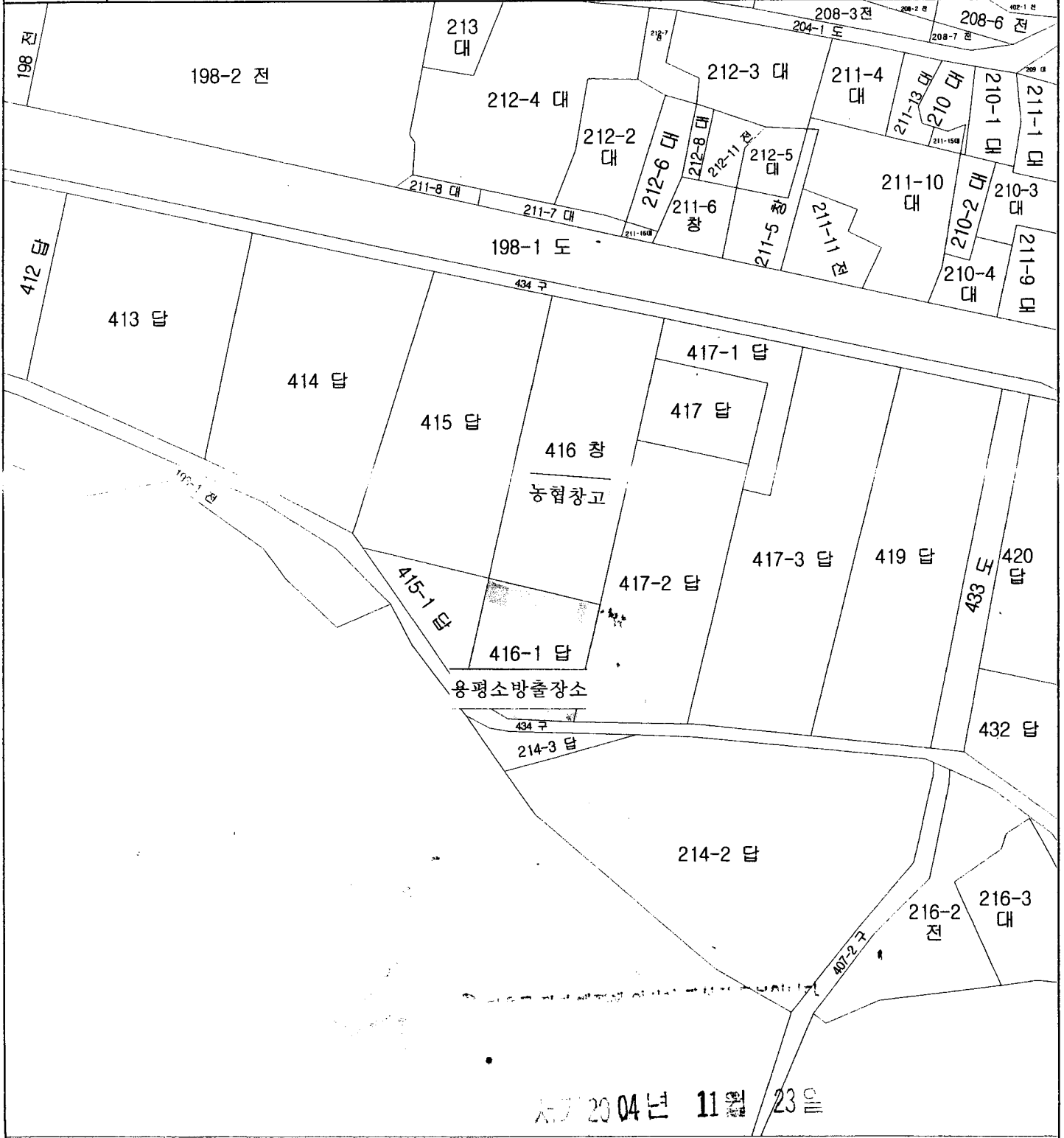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강원도 평창군수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04-1123-0079-06	처리시각	10시 26분 05초	작성자	김태한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지번	416-1	축척	1 : 1200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4년 11월 23일 수

강원도 평창군수

